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하려면 중소기업업종에 ‘인쇄’ 포함돼야

입찰제도 개선·수의계약 확대도



지난 여름철 내내 화제를 모았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논란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회의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책은 대·중소기업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들은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가칭)’를 설립,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우선이지만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는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 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가 사회 통합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당초 계약한 납품 대금을 감액할 경우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도록 했다. 이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자의적인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에도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안 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보복 가능성 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원사업자와 납품 단가 조정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종전 ‘30일간 협의’에서 ‘10일간 협의’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지난 9월 29일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회의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와 그 영향

캘린더의 한쪽 면에는 날짜가, 다른 한쪽 면에는 그림이 들어간다. 그림의 종류는 크게 중소기업업종의 재지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989년 8월에 지정되어 2006년 12월까지 존속되었던 중소기업고 유업종 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참여나 확장을 금지시킨 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 보호해 왔다. 절차상으로는 개별업체 나 단체가 품목지정을 상공자원부에 요청하면 상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대상품목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때 전체 중소기업의 27%에 달하는 약 1만 9000개사 (1992년 산업연구원조사)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의 지정, 지정계열화 등 보호제도와 관련규정이 폐지되었다. 당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소기업들은 79년에 도입되어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에 따라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져 고유업종을 해제하게 되었다고 폐지의 당위성을 밝혔다. 아울러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의 대안 또는 보완책으로 제시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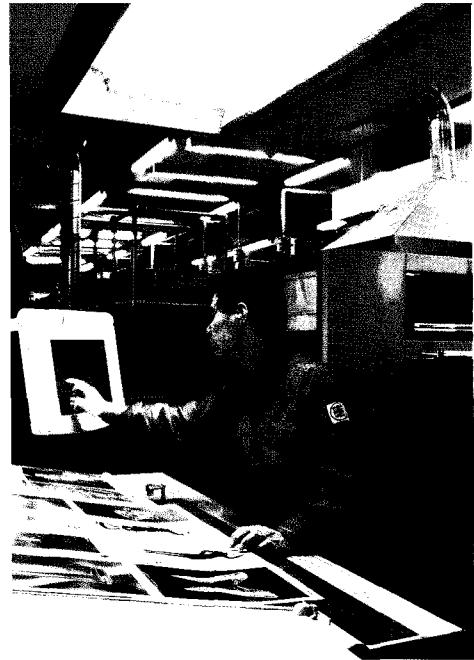
그러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2007년 1월 1일 전면 폐지된 다음해인 지난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 약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 중소기업의 76.6%가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 폐지 또는 5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예기간 중에 협동조합 차원의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금지원,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서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현재 149개사였던 대기업 계열사가 2008년 6월에는 459개사로 3배에 가깝게 급증한 것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응답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48.9%)하거나 ‘5년 유예’(34.8%)를 희망, 83.7%의 중소기업이 5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으며 현재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96.2%의 업체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중 대기업과의 경쟁력 차이로 유예기간 동안 체질강화에 성공하지 못해 사업조정을 재신청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유예기간 중 협동조합 차원의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2.5%가 ‘아니다’라고 대답해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사업조정제도 개편 방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인쇄업종은 1997년 폐지

한편, 인쇄업계는 지난 1997년에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일치감차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몇몇 대기업 및 대형신문들의 상업인쇄시장 및 패키지인쇄 시장 진출 시도에 맞서 범업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마찰을 빚는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인쇄업계는 인쇄 경기 하강과 인쇄 마진율의 저하에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금도 인쇄업계는 사업조정제도에 따라 모 대기업의 상업인쇄 시장 진출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으나 대기업과의 대



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고유업종제도와 똑같지는 않아**

오는 연말 출범될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 (가칭)에서 검토하게 될 중소기업업종은 지난 2007년부터 완전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똑같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인 제도였던 데 비해 중소기업업종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성이 없지만 사업조정제도나 공정거래법(부당내부거래 관련 부분)등의 기준 제도와 법규를 적용하여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어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이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를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추후에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법업계적으로 법률 연구 및 대처 필요**

언뜻 생각하면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법령의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지난 2006년까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없어진 것도 2004년 관련 법조항이 삭제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뤄진 것이다. 올 연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 (가칭)의 활동이나 '중소기업업종' 지정 등의 논의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규모의 기업체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인쇄업계의 현실에서 법률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조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챙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업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업종 지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가격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조항별로 다양한 정보와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찾는데도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3조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 **인쇄산업의 중소기업업종 재지정 당연**

인쇄업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해마다 등록업체 숫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 수년 동안 등록업체의 수가 실제적으로 증가한 해는 없었으며 2~3%의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 왔다. 이에 따라 한때 2만을 헤아리던 인쇄업체의 숫자는 20% 가량 감소한 1만 6천여개사로 줄었다. 더욱이 인쇄업계의 수익률은 지표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피부로 실감하는 수치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에 처해 있다. 인쇄산업이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관변단체, 정부기관의 인쇄물량을 조합 등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지원하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계를 돋는 것일 뿐 아니라 100만 인쇄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도 필수적이며 21세기에 걸맞는 문화산업으로서 인쇄산업을 다시금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